의료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16. 2014고정427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조석규(기소), 하지수(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(유)화우외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8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